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대상 확대의 쟁점과 입법 과제

OTT·포털·MPP 확대 법안과 EU·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 입법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분담금 제도의 헌법적·통상적 정합 설계 방향

부과대상 확대, 도입 여부를 넘어 제도 설계의 단계로

요약 — 상황 · 문제 · 해법

상황	방송광고 재원의 이탈과 분담금 부담의 고착 2025 회계연도 방송광고매출은 2조 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하였고, 2022년 이후 3년간 약 3분의 1이 축소되었다. 광고 재원을 흡수한 OTT·포털은 방송사업자가 아니어서 분담금 납부의무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반면, SO는 영업이익의 168%에 이르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국회에는 여야의 6개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방미통위는 2027년 적용을 목표로 징수체계 개편 연구에 착수하는 한편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부과와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	부과대상·상한만 규정, 과세표준 정의와 집행 수단은 하위법령에 위임 동일한 MPP라도 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 상한이 세 갈래로 분기되며, OTT·포털의 국내귀속매출 정의, 부과단위, 역외 사업자의 포착 수단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포털은 방송통신 진흥과의 관련성이 약하여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국 사업 자만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의 5% 기여금은 통상압력 속에 2026년 6월 징수 실적 없이 철회되었다.
해법	주요국 공통의 집행 장치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 EU·프랑스·독일·북유럽·호주는 예외 없이 '자국 내 수익'을 산정 기초로 법정하고, 타겟팅 기준으로 역외 사업자를 포섭하며, 등록·신고의무와 임계 값을 갖춘 뒤 요율을 정하고 있다. 최근의 입법은 순수 부과금형에서 투자의무형·혼합형으로 수렴하고 있는바, 우리 법안 역시 기금 구조를 유지하되 투자 연동 경감을 결합한 혼합형으로의 재설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대 권고	1 부담금 정당화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용도의 연계 포털의 과세표준을 미디어·콘텐츠 광고매출로 한정하고, 기금 용도를 납부자 집단의 이익과 연계
	2 국내귀속매출과 부과단위의 법정 정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문매출 산정 방법, 표준 서식에 의한 신고의무
	3 역외 집행조항 패키지의 입법 타겟팅·등록·신고·제재·임계값·투자공제·이중부담 조정
	4 투자 연동 경감을 결합한 혼합형 설계 비율형 임계값 + 초과투자 비례공제 + 공제 상한 30~50%
	5 통상 비차별과 국내 역차별의 동시 관리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비차별 원칙, 면제·경감에 따른 '표적 부과' 방지

출처: 방미통위 202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2026. 6.)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각국 법령 및 정부 발표자료

보고서의 구성 — 다섯 가지 질문

목차와 논리 구조

01	재원·구조	분담금의 과세표준은 어떠한 구조로 축소되고 있으며,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5 - 7
02	입법 동향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확대 법안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9
03	해외 입법례	주요국은 어떠한 모델·요율·집행 장치로 OTT의 기여를 요구하며, 캐나다는 왜 좌초하였는가	11 - 14
04	시사점·설계	우리 법안에 무엇이 비어 있으며, 어떠한 설계로 보완하여야 하는가	16 - 17
부록		용어 · 법령 출처 · 판정 기준	19 - 21

본 슬라이드 텍스트는 본문 보고서(각주 36개)의 시각 요약본이며, 슬라이드의 각주 번호는 본문 각주 번호와 일치한다.

01

재원·구조

분담금의 과세표준은 어떠한 구조로 축소되고 있으며,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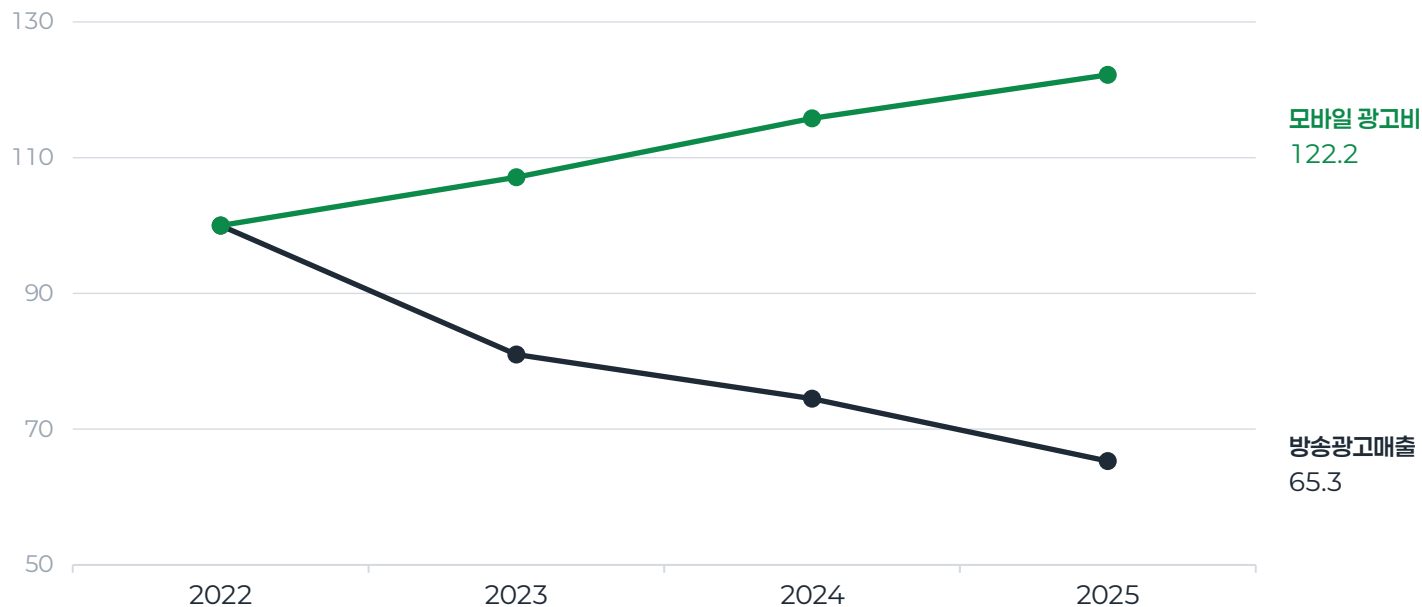
이 장의 결론

방송광고매출은 3년간 3분의 1이 축소되었고, 사업자군별로 상이한 과세표준 아래 SO는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징수율 조정을 2027년으로 이연하고 부과대상 확대를 법 개정 과제로 정리하였다.



방송광고매출 3년간 3분의 1 감소, 모바일 광고비는 22% 증가

방송광고매출과 모바일 광고비 지수 (2022 = 100)



(억 원)	2022	2023	2024	2025
방송광고매출	30,831	24,984	22,964	20,134
전년 대비		-19.0%	-8.1%	-12.3%
모바일 광고비	68,035	72,887	78,802 ^o	83,108 ^o

주: 방송광고매출은 지상파·PP·SO·위성·IPTV의 합계. 2021년 방송광고매출은 공표 원문 확인 후 추가 예정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3·2024·202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KOBACO, 2024 방송통신광고비조사(° = 추정치)

시사점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 변화

2025년 지상파 광고매출은 6,936억 원(-17.0%), PP는 1조 1,331억 원(-9.6%)으로 모든 사업자군에서 감소하였고, 지상파는 1,174억 원의 영업손실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방미통위 집계에 따르면 2021~2025년 방송광고는 연평균 10.6% 감소한 반면 모바일 광고는 7.5% 성장하였다. 광고 재원이 방송 밖으로 이동하는 동안 분담금의 과세표준은 방송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수율의 조정만으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사업자군별로 상이한 과세표준·상한·실효율, SO는 영업이익 초과 부담

현행 방송통신발전법 제25조의 분담금 체계와 2024 회계연도 실효 징수율

사업자군	과세표준	법정 상한	실효 징수율 (대표 사업자)	2024 분담금	특기사항
중앙지상파	방송광고매출	6%	MBC 4.12 · SBS 3.65 · KBS 0.68 · EBS 1.50	MBC 85억 · SBS 88억	KBS·EBS 공공성 1/3 감경, 손실 발생 시 추가 감경
지역·중소지상파	방송광고매출	6%	0.5 ~ 1.1	—	조정계수 0.931, 순손실 규모별 감경
중편·보도PP	방송광고매출	6%	TV조선 3.13 · MBN 2.98 · JTBC 0	—	11.67% 일괄 감경, JTBC는 재정상태 감경으로 0원
홈쇼핑PP	영업이익	15%	상한 내 고시율	—	유일한 이익 기준 과세표준
SO(케이블)	방송서비스매출	6%	1.5 (고시, 2017년 이래 동결)	약 250억 (90개사)	영업이익 149억 대비 168%, 적자 38개사도 95억 납부
위성·IPTV	방송서비스매출	6%	1.5	—	재정상태 경감이 제한적으로 작동
OTT · 포털 · MPP	(부과대상 아님)	—	—	0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납부의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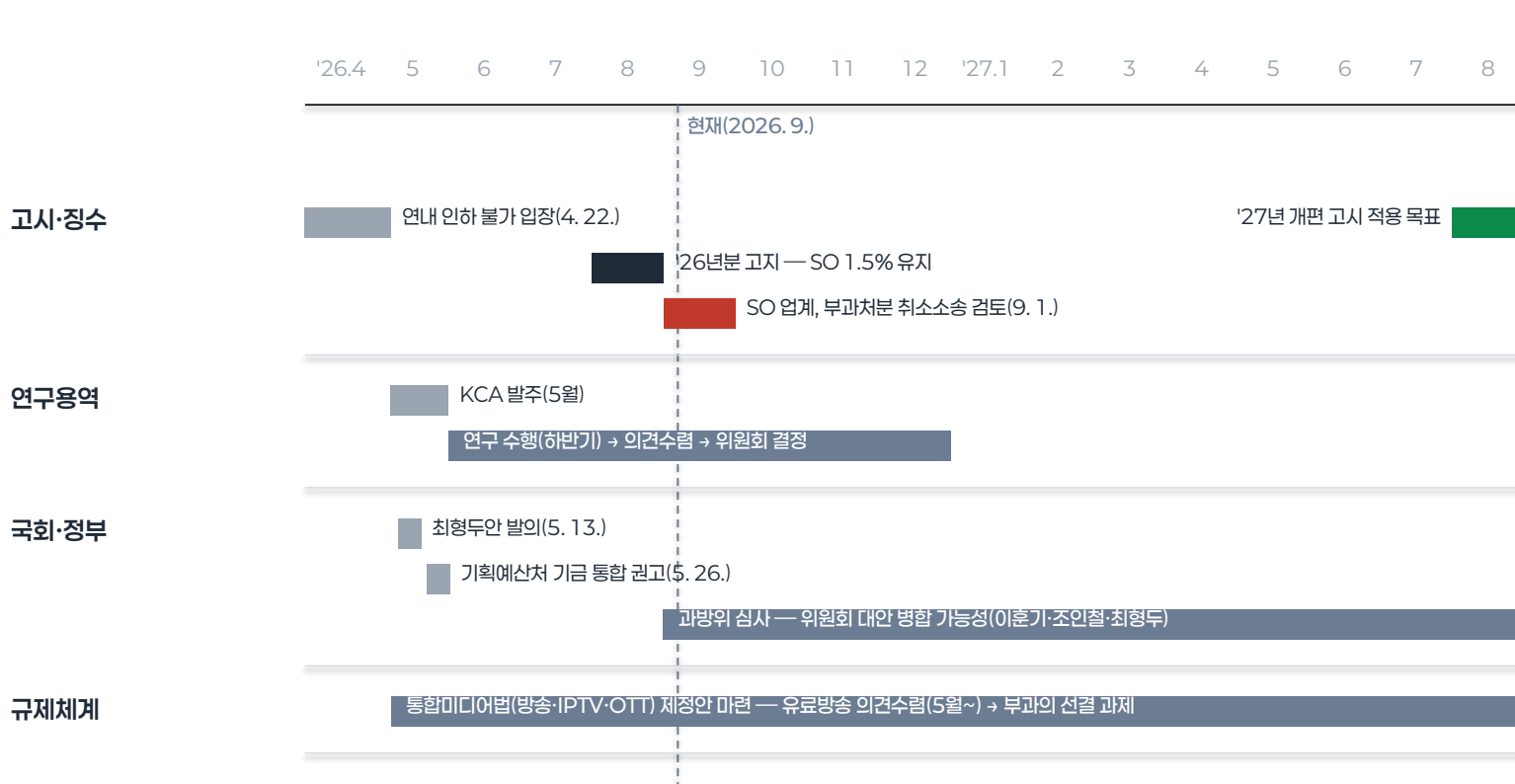
실효 징수율 막대는 사업자군 내 최고값을 법정 상한 6% 대비로 표시한 것이다. 빨간 막대 =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사업자군

면제·경감(시행령 제13조): 광고매출액 50억 원 이하이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와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는 면제되고,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비율만큼 경감된다.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경감은 광고매출 기준 사업자군에서는 폭넓게, 방송서비스매출 기준 사업자군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 2024 분담금은 2025년도 공고 결정액(2024 회계연도 실적 기준). 홈쇼핑 고시율은 별도 확인 필요
출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시행령 제13조;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182호(2025. 9. 19.); 데일리안(2026. 4. 22.)

징수율 조정은 2027년으로 이연, 부과대상 확대는 법 개정 과제로

2026~2027년 분담금 제도 개편의 네 트랙



시사점

논점의 이동 — 징수율 수준에서 부담 주체로

방미통위는 8월 결정 시한 등 일정상의 제약을 이유로 연내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리된 고시의 통합과 징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선행하고, 부족 재원에 관하여는 OTT·포털로의 부과대상 확대를 검토하되 이는 법 개정 사항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기금존치평가에서 정책 대상의 중첩과 수입원(주파수할당대가)의 동일성을 이유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발기금의 통합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확대는 기금 용도의 재편과 분리하여 논의하기 어렵게 되었다.

8월 말 SO 징수율 1.5% 유지가 확정되자 SO 업계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미통위는 "기금 부과를 위해서는 미디어 전반의 규제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부과대상 확대는 OTT를 편입하는 통합미디어법의 제정과 연동되어 있는 셈이다.

주: 막대의 길이는 보도를 기준으로 일정을 월 단위로 근사한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니다

출처: 데일리안(2026. 4. 22.); 디지털데일리(2026. 5. 13.); 머니투데이(2026. 5. 25.);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2026. 5. 26.); 일요신문(2026. 9.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02

입법 동향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확대 법안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 장의 결론

OTT에 관하여는 '해당 부가통신사업 매출 × 1%'로 수렴하나, MPP의 과세표준은 세 갈래로 분기되어 있고 포털은 최형두안 고유의 구조이다. 부과대상 확대의 실질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의 설계에서 결정된다.



6개 법안 비교 — OTT는 수렴, MPP 과세표준은 세 갈래로 분기

방송통신발전법 제25조 개정안 6건 — 부과대상별 과세표준 × 징수율 상한

발의안 원문 기준

법안 (의안번호 · 발의일)	포털	OTT	MPP	기존 사업자 변경
최형두 (2218959 · '26. 5. 13.)	광고매출 ×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해당 부가통신 매출 × 1%	방송광고매출 × 3% 매출 3천억 초과	지상파·종편·보도 상한 6% → 3% 제작비·공익기여 경감 단서
이훈기 (2213646 · '25. 10. 20.)	—	—	방송서비스매출 × 6% 기준 전부 대통령령	—
최민희 (2203660 · '24. 9. 4.)	—	—	방송서비스매출 × 6% 매출 3천억 초과	지상파·종편 과세표준에 협찬매출 합산
조인철 (2201663 · '24. 7. 12.)	—	해당 부가통신 매출 × 1% 이용자수·트래픽 기준	—	—
정필모 (2124568 · '23. 9. 20. · 폐기)	—	—	방송서비스매출 × 6%	—
최명길 (2007023 · '17. 5. 24. · 폐기)	—	—	방송광고매출+협찬 × 6%	SO·IPTV 과세표준에 결합상품매출 합산

■ 광고매출 기준(지상파·종편군) ■ 방송서비스매출 기준(SO·IPTV군) ■ 해당 사업 매출 기준(OTT)

읽는 법 동일한 MPP(예: CJ ENM)라도 광고매출 × 3%(최형두안)와 방송서비스매출 × 6%(최민희·이훈기·정필모안) 사이에는 과세표준 자체가 수 배 차이 나므로, 부담은 최대 8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 OTT는 두 법안이 '해당 부가통신사업 매출 × 1%'로 수렴하나, 통합법인의 사업부문 매출 분리는 실무상 난제로 남아 있다. 포털은 최형두안 고유의 구조로서 신문법상 지위를 매개로 하므로, 방송통신 진흥과의 관련성이 헌법적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주: '—'는 해당 법안이 규정하지 않음을 뜻한다. 상한은 법률상 최대치이며 실제 징수율은 고시로 정한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원문(2218959 · 2213646 · 2203660 · 2201663 · 2124568 · 2007023)

03

해외 입법례

주요국은 어떠한 모델·요율·집행 장치로 OTT의 기여를 요구하며, 캐나다는 왜 좌초하였는가

이 장의 결론

주요국은 부과금형에서 투자의무형·혼합형으로 이행하였고, 요율의 편차와 무관하게 '자국 내 매출'·타겟팅·신고의무·임계값을 예외 없이 갖추고 있다. 외국 사업자만을 겨냥한 캐나다의 기여금은 통상압력 속에 징수 실적 없이 철회되었다.



주요국은 투자의무형·혼합형으로 이행, 순수 부과금형은 한국 법안뿐

재정기여 제도의 유형 × 요율 포지셔닝 (요율 = 자국 내 매출 대비 %)

요율 높음 ▲



시사점

좌하단 시분면에 남은 한국 법안과 캐나다

부과금형은 재원이 기금을 경유하므로 부과대상과 용도의 관련성(부담금의 정당화)과 통상 분쟁에의 노출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캐나다는 이 모델을 채택하였다가 2026년 철회하였고, 영국은 도입 자체를 거부하였다.

투자의무형은 재원이 제작 생태계로 직접 흐르므로 납부자 집단의 이익과의 연계가 자명하고, 문화정책 조치로 정당화될 여지가 크다. 2024년 이후의 도입국(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호주·독일안)이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혼합형(덴마크·벨기에)은 기본 부과금에 투자 연동 경감을 결합하여 양 모델의 장점을 취한다. 기금 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치로 평가될 수 있다.

주: 요율은 법정 상한 또는 기본율이다. 혼합형은 가로축 중앙에 배치하였고, 속 빈 원은 미시행(철회·거부·법안 단계)을 뜻한다

출처: 각국 법령·정부 발표(본문 IV장 종합표 참조)

요율은 2~25%로 상이하나 '자국 내 매출'·임계값·신고의무는 공통

국가별 요율 범위와 집행 장치

국가	0%	5%	10%	15%	20%	25%	요율 구조	산정 기초	임계값	신고
프랑스		●				●	TSV 5.15% 부과금 / SMAD 투자 20~25%	프랑스 내 매출	—	●
이탈리아				●			순매출 16% 투자(70% 이탈리아 작품)	이탈리아 내 순매출	—	●
벨기에 FWB	●		●				매출 구간별 누진, 투자 또는 기금 납부	매출 구간	누진	●
독일	●		●				FFG 1.8~2.5% + 투자의무법 8%(안)	독일 내 순매출	2,000만 유로	●
호주			●				프로그램 지출 10% 또는 수익 7.5%	호주 내 지출·수익	구독자 100만	●
덴마크	●	●					2% + 투자 5% 미만 시 3% 가산	덴마크 내 매출	—	●
네덜란드		●					매출 5% 투자	네덜란드 내 매출	1,000만 유로	●
캐나다		○				○	5% → 15%(2026. 5.) → 철회	캐나다 내 방송수익	2,500만 CAD	●
스위스		●					총매출 4% 투자	총매출	—	●
한국안		●	●				OTT 1% · MPP 3% · 포털 6%	해당 사업 매출·광고매출	대통령령	○

시사점

요율은 선택, 산정 기초와 집행 장치는 필수

AVMSD 제13조 제3항이 '해당 회원국에서 얻은 수익'을 산정 기초로 명문화한 이래, 유럽 각국은 자국 내 매출·순매출을 법정하고 등록·매출 신고의무를 전제로 요율을 정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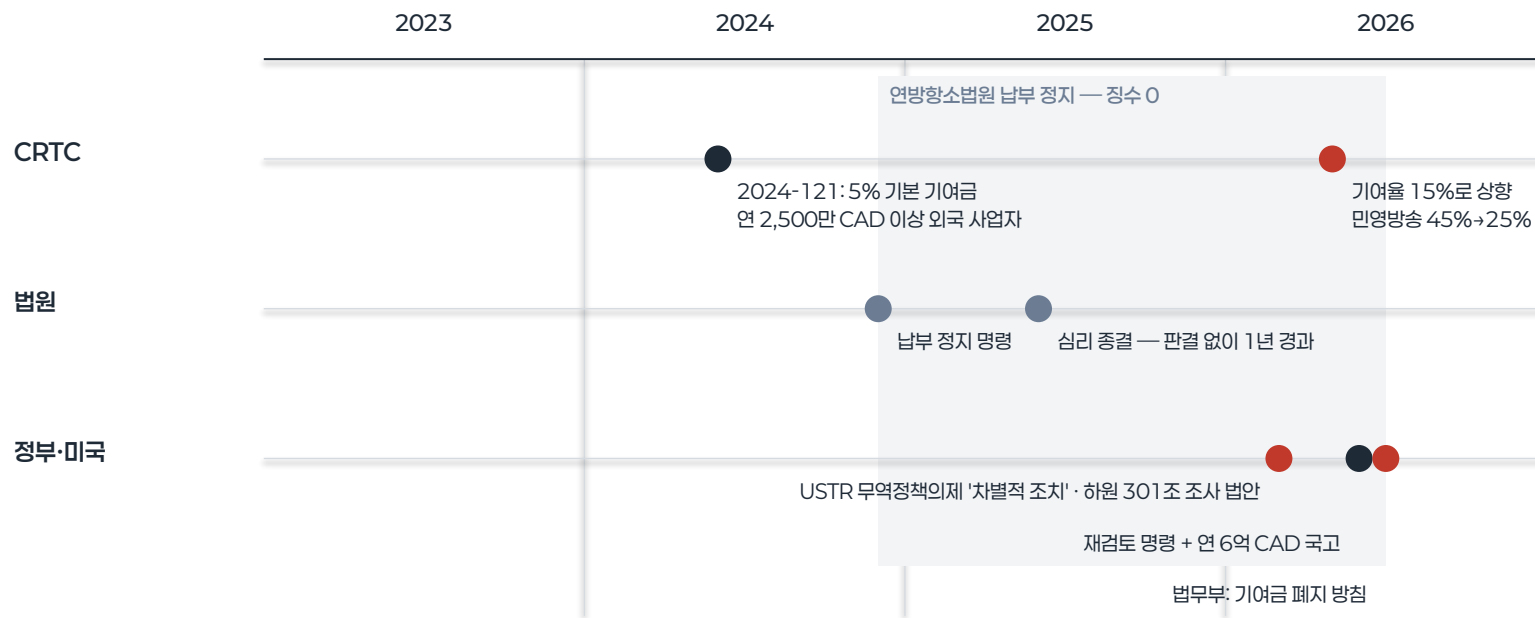
임계값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여 비례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다(네덜란드 1,000만 유로, 독일 2,000만 유로, 호주 구독자 100만 명). 우리 법안은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다.

한국안은 요율(1~6%) 자체는 낮은 편이나, 산정 기초의 정의와 신고의 무가 비어 있어 표의 우측 세 항목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주: ● 등록·매출 신고의무 법정, ○ 미규정. 요율은 법정 상한 또는 기본율
출처: 각국 법령·정부 발표·보도자료(본문 각주 16~32)

캐나다 5% 기여금 — 납부 정지 상태에서 통상압력으로 징수 없이 철회

온라인스트리밍법(2023) 이후 기여금 결정·소송·정부 대응 (2023 – 2026)



경로 외국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기여금 → 통상 분쟁의 표적(USTR·CUSMA 공동검토·301조 법안) → 소비자 전가 우려에 따른 국내 정치적 지지의 약화("지금은 캐나다인의 비용을 올릴 때가 아니다") → 국고 대체. 2023년 법 제정부터 2026년 철회에 이르기까지 실제 징수액은 0이었다.

시사점

캐나다 2024년 결정과 가장 유사한 한국 법안의 구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납부하게 하고, 이용자수·매출 임계값으로 대상을 정하며, 직접 투자분의 갈음(1.5%p)을 허용하는 구조는 최형두안의 골격과 일치한다.

차이는 캐나다가 외국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법안은 형식상 국내·해외를 구별하지 않으나, 시행령상 결손금 기준의 면제·경감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적자 상태의 국내 OTT는 면제되고 흑자인 글로벌 사업자에 부담이 집중되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2025년 11월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디지털 비차별 약속과 2026년 3월 개시된 USTR의 301조 조사(망 이용대가·온라인플랫폼법 지목)는 이러한 위험을 통상 의제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출처: CRTC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2024-121; BNN Bloomberg(2026. 6. 3.); Michael Geist(2026. 3., 7.); USTR 2026 Trade Policy Agenda

역외 집행 장치 6요소 — 한국 법안은 4개 항목 미비

역외 집행조항 6요소의 구비 수준 (● 법정 완비 ~ ○ 미규정)

자체 판정·예비적

	타겟팅 기준	국내귀속매출 정의	등록·신고·제재	임계값	투자공제	이중부담 조정	비고
EU AVMSD (지침)	●	●	◐	◐	◐	◐	회원국 이행에 위임
프랑스	●	●	●	◐	●	◐	TSV·SMAD 병존, 의무액 2배 제재
독일	●	●	◐	●	◐	◐	FFG 정률, 투자의무법 2027 시행 전망
덴마크	●	●	◐	◐	●	◐	첫해 14개사 9,470만 DKK
네덜란드	●	●	◐	●	●	◐	2026년 평가 자료 부족 문제
스위스	●	◐	◐	◐	●	◐	투자액 2년 새 25% 증가
벨기에 FWB	●	●	◐	◐	●	◐	상계 쟁점 CJEU 회부 중
호주	●	●	●	●	●	◐	2025. 11. 입법, ACMA 연례 보고
캐나다	●	●	◐	●	◐	◐	징수 0 → 철회
한국 (최형두안)	◐	◐	○	◐	◐	○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

● 법률·지침에 명문화

◐ 명문화되었으나 범위 제한

○ 하위법령·재량에 위임

◐ 논의·회부 단계

○ 미규정

주: 예비적 자체 판정으로서 법령 개정·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최형두안(2218959)의 조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출처: 각국 법령 원문 및 정부 발표(부록 A2). 판정 기준은 부록 A3

04 시사점·설계

우리 법안에 무엇이 비어 있으며, 어떠한 설계로 보완하여야 하는가

이 장의 결론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과세표준·부과단위의 명확화, 역외 집행 패키지, 투자 연동 경감, 통상 비차별의 다섯 과제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 안에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현행 법안의 5대 설계 공백과 권고 설계

5대 과제별 현행 법안의 상태 · 해외 표준 · 권고 설계

과제	현행 상태	현행 법안(최형두안 등)	해외 표준	권고 설계
①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포털을 신문법상 지위로 포섭하고 광고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규정. 기금 용도와의 연계 규정 없음	벨기에 현재: '플랫폼이 수익을 얻는 창작 자원への 기여' — 대상·용도의 근접성 확인	포털의 과세표준을 미디어·콘텐츠 광고매출로 한정하고, 기금 용도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진흥 등 납부자 집단의 이익과 명시적으로 연계
② 과세표준·부과단위		'전년도 광고매출액', '해당 부가통신 매출액'만 규정. 국내귀속·별도/연결·부문 분리는 위임	AVMSD §13③ '해당 회원국에서 얻은 수익' 명문화. 각국은 자국 내 매출·순매출을 법정	국내귀속매출의 정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문매출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 표준 서식에 의한 신고의무
③ 역외 집행 패키지		역외 사업자의 포착·제재 규정 없음. 임계값은 대통령령 위임	타겟팅·등록·신고·제재·임계값·투자공제·이중부담 조정의 6 요소	6요소를 하나의 집행조항 패키지로 입법. 미신고 시 제재와 추계 과세 근거 마련
④ 투자 연동 경감		제작비 지출 규모·공익기여도를 면제·경감·차등에 반영할 수 있는 단서만 존재	덴마크 2%+3% 가산, 캐나다 5% 중 1.5%p 같음, 프랑스 인정 비용 열거주의	매출 대비 비율형 임계값 + 초과투자 비례공제 + 공제 상한 30~50%. 인정 비용의 범위 열거
⑤ 통상 비차별·역차별		형식상 국내·해외 동일 적용. 결손금 기준 면제·경감으로 실질 부담은 흑자 글로벌사에 집중	캐나다: 외국 사업자 표적 기여금 → USTR·301조 → 철회	산업 영향 분석의 선행. 임계값·투자공제로 부담 분포 조정.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차별 원칙 및 USTR 301조 조사(2026. 3.~)와의 정합성 검토

주: 현행 상태는 부록 A3의 기준에 따른 자체 판정이다
출처: 본문 보고서 V장; 각국 법령(부록 A2)

투자 연동 경감 — 임계값·공제율·상한으로 기금 안정성과 투자 유인의 균형

혼합형(기본 분담금 + 초과투자 비례공제)의 산식과 작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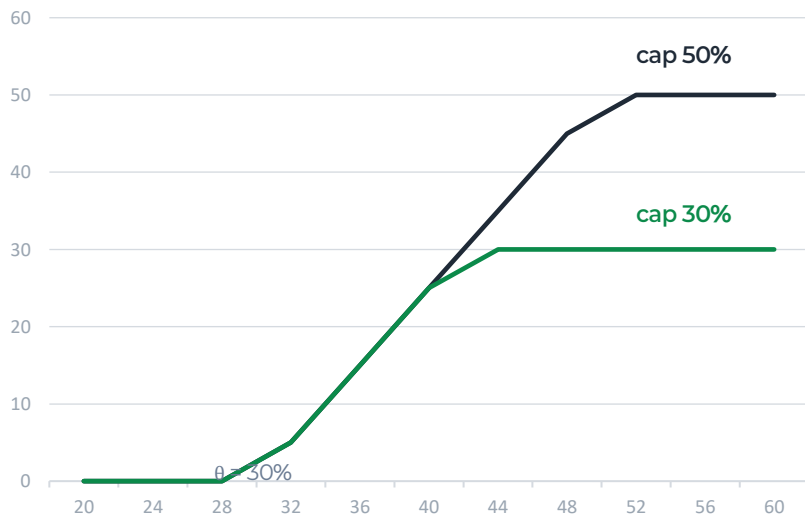
개념도 · 수치는 예시

분담금 = 과세표준 × 징수율 - 투자공제

투자공제 = MIN(분담금 × cap, (제작비 - θ × 매출) × δ)

θ 임계 투자율(매출 대비) · δ 공제율 · cap 공제 상한(분담금 대비)

공제액 / 분담금 (%) ↑ → 제작비 / 매출 (%)



θ 임계값

매출 대비 비율형으로 규정함이 법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합한다. 절대금액 기준은 대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역진 구조가 되며, 분모를 3개년 평균 매출로 하면 일시적 매출 충격에 따른 자격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

δ 공제율

임계 초과 투자액에 비례하므로 절벽효과 없이 추가 투자 1원당 공제가 증가하여 한계 유인이 보존된다. 정률 경감(통과 시 일률 $\alpha\%$)은 통과 이후의 추가 투자 유인이 소멸한다는 한계가 있다

cap 상한

캐나다 CRTC의 30%(5% 중 1.5%p)가 선례이다. cap 도달 구간에서는 한계 유인이 소멸하므로, δ 를 낮추고 cap을 높일수록 유인 보존 구간이 확대된다

적용 순서

재정상태 면제·경감 → 제작비 공제 → 공익기여 가감의 순서를 고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순서 규정이 없으면 재정상태 감경으로 분담금이 0인 사업자에게 제작비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충돌이 발생한다

시사점

최형두안 단서 조항 — 산식 수용의 법적 기초

개정안은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한 자'를 면제·경감 대상에 추가하고, 공익 기여도를 징수율 차 등의 고려요소로 규정하였다. 위임 문언이 '금액'이므로 시행령은 '매출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비율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문과 정합한다.

제작비의 회계적 정의(방송프로그램제작비와 구입비의 포함 여부), OTT의 표준 서식 신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귀속 제작비 인정 범위는 프랑스의 열거주의 입법기술을 참고하여 시행령·고시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익기여도는 기부금 단독 지표보다 방송평가(장애인방송·재난방송) 연계 등급제가 객관성과 행정비용의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 곡선은 $\theta=30\%$, δ 임의값에 의한 개념도로서 실제 사업자 데이터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출처: 최형두 의원안(2218959) 제25조 개정 문언; CRTC 2024-121; Décret n° 2021-793(프랑스)

결론 — 다섯 과제의 동시 충족이 제도 설계의 조건

주요국은 예외 없이 자국 내 수익을 산정 기초로 법정하고, 타겟팅 기준으로 역외 사업자를 포섭하며, 등록·신고의무와 임계값을 갖춘 집행 장치를 먼저 마련하였다. 최근의 입법은 순수 부과금형에서 투자의무형·혼합형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외국 사업자만을 겨냥한 기여금이 통상압력 앞에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은 캐나다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과세표준과 부과단위의 명확화, 역외 집행 패키지, 투자 연동 경감, 통상 비차별은 서로 독립된 과제가 아니다. 방미통위의 징수체계 개편 연구와 국회의 법안 심사가 병행되는 지금이 통합적 설계를 검토할 적기이며, 그 출발점은 누가 무엇을 위하여 부담하는가에 대한 답을 법률에 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NEXT STEPS

2026. 하반기

방미통위·KCA 징수체계 개편 연구 — 사업군별 부과기준·면제경감·기부금 타당성

2026. 하반기 ~ '27

과방위 법안 심사 — 이훈기·조인철·최형두안의 병합 여부, 과세표준·집행조항의 보강

2027. 8.

개편 고시 적용 — 시행령·고시 단계에서 국내귀속매출의 정의와 투자공제 산식 확정

부록 A1 — 용어와 약어

본문과 슬라이드에서 사용한 주요 개념

용어	정의
방발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기금으로, 방송사업자 부담금·주파수할당대가 등 법정부담금으로 조성된다
부담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군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과세표준 (부과기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이익 지표. 방송광고매출·영업이익·방송서비스매출 등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다
징수율 상한 / 고시율	법률이 정한 최대 비율(6%·15%)과 방미통위 고시로 실제 적용되는 비율. 실효 징수율은 감경 적용 후의 최종 비율
MPP	복수채널사용사업자(Multiple Program Provider).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PP. 매출 3천억 원 초과 기준 시 사실상 CJ ENM이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최형두안이 포털(네이버·카카오)을 포섭하는 법적 지위
AVMSD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Directive 2010/13/EU, 2018/1808 개정). 제13조가 VOD 사업자 재정기여의 근거
타겟팅 원칙	설립자가 아니라 자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규제 관할을 정하는 원칙(AVMSD 제13조 제2항)
국내귀속매출	해당 국가에서 얻은 수익만을 재정기여의 산정 기초로 삼는 원칙(AVMSD 제13조 제3항)
부과금형 / 투자 의무형 / 혼합형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납부(levy) / 자국 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investment obligation) / 기본 부과금에 투자 연동 경감을 결합
임계값 (de minimis)	소규모 사업자를 의무에서 제외하는 매출·이용자 기준
하비 볼	정성 평가를 원의 채움 정도(○●●●●)로 표시하는 5단계 기초. 판정 기준은 A3

부록 A2 — 법령·결정·판결 출처

본문 각주와 대응하는 1차 자료

구분	출처
한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25조, 시행령 제13조; 방미통위 고시 제2026-23·24·25호(2026. 7. 9.); 공고 제2025-182호(2025. 9. 19.); 2025 회계연도 재산상황 공표(2026. 6. 19.); 국회 의안 2218959·2213646·2203660·2201663·2124568·2007023·2201796(기금 통합)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7헌마860(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합헌); 2003. 12. 18. 2002헌가2(문예진흥기금 모금, 위헌); 2005. 3. 31. 2003헌가20(학교용지부담금, 위헌); 1999. 5. 27. 98헌바70(방송수신료)
EU	Directive 2010/13/EU as amended by Directive (EU) 2018/1808, Art. 13(2)–(3), Art. 33; AVMSD 검토 공개협의(2026. 2. 10.~5. 1.), 평가보고서·개정안 제출 기한 2026. 12. 19.; European Media Board 개정 제안(2026. 7. 30.)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 1609 sexdecies B(TSV); Décret n° 2021-793(SMAD); Sénat, PLF 2026 avis '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독일	Filmförderungsgesetz(FFG) 2025; Entwurf MedienInvestVG(연방정부안, 2026. 5. 27. 각의 의결)
덴마크·네덜란드·스위스	Lov om kulturbidrag(2025. 1. 1. 시행); Mediawet 2008 art. 9.14h 등(2024. 1. 1.); Filmgesetz 개정(2022. 5. 15. 국민투표, 2024. 1. 1. 발효)
벨기에	왈로니·브뤼셀 연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데크레(2024 개정); 헌법재판소 2026. 3. 26. 판결(넷플릭스 청구, CJEU 4개 정점 회부)
캐나다	Online Streaming Act(Bill C-11, 2023); CRTC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2024-121(2024. 6. 4.); CRTC 결정(2026. 5. 21.); 문화유산부 장관 발표(2026. 6. 3.); 법무부 연방향소법원 제출 서한(2026. 7. 17.)
영국·호주	CMS Committee, British film and high-end television(2025. 4.) 및 정부 답변(2025. 7.); Streaming Content Requirement Bill 2025(Cth, 2025. 11. 통과)
미국·통상	USTR, 2026 Trade Policy Agenda(2026. 3.); Section 301 조사 개시(2026. 3. 11., 16개국);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2026. 3. 31.); H.R. Protecting American Streaming and Innovation Act(2026. 3.);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2025. 11. 14.)

부록 A3 — 집행 장치 6요소의 판정 기준

슬라이드 14·16의 하비 볼 판정에 적용한 기준

요소	● 완비 (4)의 요건	○ 미규정 (0)의 상태
타겟팅 기준	자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외 사업자를 법률·지침이 명시적으로 포섭	설립지 기준이거나 '이용자수·트래픽' 등 간접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국내귀속매출 정의	'해당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법률·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산정 방법을 규정	'매출액'만 규정하고 국내귀속·부문 분리 기준이 없음
등록·신고·제재	사업자 등록 또는 매출 신고의무와 미이행 제재가 법정	신고의무가 없거나 일반 행정조사에 의존
임계값	매출·이용자 기준 임계값이 법률 또는 시행령에 수치로 규정	기준을 하위법령에 전부 위임하거나 미규정
투자공제	자국 콘텐츠 직접 투자분을 부담에서 같음·공제하는 산식과 인정 범위가 규정	경감 가능성만 단서로 두고 산식·범위 미정
이중부담 조정	복수 국가에서 기여하는 경우의 상계·조정 규정	규정 없음(EU는 CJEU 회부로 판단 대기)

중간 단계 ●(3) 명문화되었으나 범위·대상이 제한적 ○(2) 하위법령·행정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운용 근거는 존재 ○(1) 논의·회부·법안 단계로 효력 미발생. 판정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결정의 문언에 따른 예비적 자체 판정이며, 각국의 시행령·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아이앤아이리서치 정책연구팀 자체 기준